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의 실효성

01 주요 내용

- 정부는 8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 시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를 시행
 - 지원대상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고소득자 및 고액재산가 제외)

* (소득기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 초과
 *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
- 지원금액 : 실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지원
- * 인정소득의 상한선은 70만원으로 설정되어 최대 월 연금보험료는 6.3만원으로 제한
- 구직급여 수급자들 중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및 수급액 증가효과가 나타남
 - 수급자들은 실적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또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남

<예시> 실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인 갑동씨의 실업크레딧 지원
 - 인정소득 70만원에 보험료를 9% 적용한 6만3천원의 일부인 월 4만7천원(75%)을 정부가 부담, 갑동씨는 월 1만 6천원 납부

- 그러나 도입되는 실업크레딧 제도는 외국 사례에 비하여 i)대상자의 제한, ii)인정가입기간의 엄격성, iii)낮은 인정소득수준, iv)개인부담의 존재 등으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가 예상
- i) 대상자의 제한 : 우리나라는 대상자를 실업급여 수급자에 한정하고 있는데, 현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의 규모가 2014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21.0%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임
 - 외국사례의 경우 영국, 프랑스, 일본의 경우에는 실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중이며, 독일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업급여의 사각지대가 매우 낮고 급여 수급기간 또한 6~24개월로 길게 나타남

<표 1> 적용대상 규정에 따른 국가 분류

실업급여 수급자	독일, 한국
실업자 전체	영국, 프랑스, 일본

- ii) 인정가입기간의 엄격성 :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 독일, 영국, 일본은 생애/회당 산입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프랑스도 1회당 산입기간의 제한이 있으나 55세 이상은 최대 5년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3개월로써 산입기간의 의미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표 2〉 인정가입기간 규정에 따른 국가분류

		회당 산입기간	
		제한 없음	제한 있음
생애 산입기간	제한 없음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제한 있음		한국

- iii) 낮은 인정소득수준 : 우리나라는 상한선(70만원)을 두고 있으면서 인정소득수준이 개인소득이 산식에 반영되고 최종 연금액에도 영향을 주어 다른 나라와 달리 연금액이 낮아지는 효과 발생
 - 영국, 일본은 실업크레딧의 수급이 가입기간에만 영향을 주어 개인소득이 산식에 반영되지도 않고, 최종 연금액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며, 프랑스는 개인소득이 산식에는 반영되지만 최종 연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
 - 독일은 개인소득이 산식에 영향을 주고, 최종 연금액에도 영향을 주지만 인정소득수준이 실질적 개인소득의 80% 수준으로 매우 높음

〈표 3〉 인정소득수준 규정에 따른 국가분류

		개인소득의 산식 반영	
		없음	있음
최종 연금액	영향 없음	영국, 일본	프랑스
	영향 있음		독일, 한국

- iv) 개인부담의 존재 : 다른 외국의 실업크레딧은 전액 국고 또는 (실업보험)기금으로 운영되나, 우리나라는 수급기간 동안의 보험료 중 25%는 개인의 부담이고, 나머지 보험료는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국고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
 - 크레딧이 보편화된 외국에서는 실업에 대한 사회적, 구조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가 재정적인 책임을 지는 관점에서 실업크레딧을 도입

〈표 4〉 재정부담방식에 따른 국가 분류

개인부담 없음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개인부담 있음	한국

- 실업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 및 인정기간의 확대, 연금액의 하락 방지, 개인부담의 면제 등 설계 보완이 필요함

02 경기도 시사점

- 현 실업크레딧 제도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한된 설계가 이뤄진 만큼 중앙정부에 대한 개정 건의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對 중앙정부 : 대상자를 실업자 전체로 확대, 생애산입기간 제한 폐지를 통한 인정기간의 확대, 인정소득과 최종 연금액 연계 폐지 등을 적극 건의
 - 지자체 지원방안 : 보험료의 개인부담금(25%)를 무한돌봄사업 등의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 특히 실직한 저소득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2. 양육시설 퇴소아동,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

01 주요 내용

- 국회예산정책처(2016)가 펴낸 ‘아동복지사업 평가’에 따르면, 18세 이상 양육시설 등의 퇴소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이 지역별로 1인당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이('16.7.15.)
 - 복지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은 4,600여명이며, 만 18세가 되면 해당 복지시설에서 퇴소
 -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은 평균 426만~435만원 정도이며, 대학등록금의 경우, 평균 292만~306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

〈시도별 1인당 자립정착금 지원액(2015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아동양육시설	500	500	300	500	400	300	500	500	500	100	500	500	300	300	500	500	500
그룹홈	500	500	300	500	400	300	500	500	500	300	500	500	300	300	500	500	500
가정위탁	500	500	-	300	100	-	500	500	500	500	500	-	-	-	-	500	500

*단위 : 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2016)

- 시설퇴소아동은 자립정착금을 주로 생계유지, 주거마련 등 의식주 해결에 사용
 - 항목별로는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지출이 34.9%로 가장 높고,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지출이 16.6%, 생필품 등 생활비 지출이 11.6%를 차지
- 대다수의 시설퇴소아동이 생활비 등 자립자금 부족, 안정적인 주거지 부재 등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
 - 시설퇴소아동의 44.1%는 ‘생활비 등 자립자금의 부족’ 을 자립생활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뽑았으며,
 - 주거부문에서는 퇴소자의 21.4%가 영구임대주택 등의 정부 지원 주거서비스를 이용하고 78.6%는 친척집이나 기숙사, 고시원 등 개인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
 - 퇴소아동의 취업분야는 기능직(19.9%)과 단순노무직(19.4%)이 가장 많으며, 월평균 소득은 101만원~150만원이 61.1%로 가장 많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도 22.5%를 차지
- 시설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
 - 지방이양사업인 아동복지사업의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 발생 이전까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도입 검토

02 경기도 시사점

-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 정립 및 퇴소아동 관리체계 구축
 - '15년 5월 개소한 “경기도 자립전담기관” 이 체계적인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시설아동과 가정양육아동의 자립관련 DB구축을 통한 퇴소아동 관리체계 마련
- 생계보장 및 취업·주거 등 자립의 기반을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및 연계 필요
 -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 중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74.1%로, 필요시 수급자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 일하는 청년통장 등 경기도 청년통장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초자산형성을 지원
 - LH 주거지원사업에 성인(시설장) 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 주거를 보장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경기도, 외국인 인구 전국 최다

최근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이 6월말을 기준으로 200만 명을 초과했으며, 향후 5년 내 체류외국인 수가 300만 명(전체 인구의 5.8%)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 발표

- 우리나라 체류외국인 비율은 10년 전 1.1%에서 3.4%로 크게 증가했으며, '21년이면 체류 외국인은 총 인구의 5.82%를 차지하여 OECD평균(5.7%)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
 -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총 2,001,828명)은 외국인등록자 1,137,736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343,867명, 단기체류외국인 520,225명으로 구성
- 한편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승인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고 인구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음*
 -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총 554,160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31.8%이며, 인구구성비는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동포가 결혼이민자나 유학생에 비해 높음
- 경기도에서 외국인주민 비율이 높은 곳은 안산(11.6%) · 시흥(11.5%) · 포천(9.9%) 순이며, 반면 과천(1.2%)과 구리(1.5%)는 외국인주민이 비율이 낮음
 - 전국 기초단체 중 외국인주민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안산 · 영등포 · 수원 · 구로 · 시흥 순이며 인구비율이 높은 곳은 영등포 · 금천 · 구로 · 안산 · 시흥
 - 도내 산업단지 · 재개발지역 일원 중심으로 외국인인구 거주지역 밀집 : 안산 월곡동(96.3%), 수원 세류1동(82.6%), 시흥 정왕본동(70.6%) · 정왕1동(50.3%), 김포 대곶면(50.9%) 등

*본 통계에서 외국
인주민은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90
일 이상 장기체류자
및 외국인주민 자녀
로 구성되며, 기준
일은 '15. 1. 1. 임

〈표 1〉 경기도 시군별 외국인주민 현황

	인구비	주민 수	세대 수		인구비	주민 수	세대 수		인구비	주민 수	세대 수
경 기	4.5	554,160	86,536	군 포	3.9	11,277	1,992	고 양	2.2	22,282	4,375
수 원	4.8	55,981	8,714	광 주	5.1	15,246	2,125	남양주	1.7	11,022	2,674
성 남	3.4	32,747	5,357	김 포	6.2	20,991	2,403	의정부	1.7	7,440	2,117
부 천	4.0	34,207	7,230	이 천	4.0	8,243	1,189	파 주	3.4	14,107	2,469
용 인	2.7	25,968	3,498	안 성	7.0	12,697	1,401	구 리	1.5	1,854	795
안 산	11.8	83,648	12,235	오 산	6.0	12,459	2,153	양 주	5.2	10,420	1,414
안 양	2.3	13,806	2,880	하 남	2.1	3,176	687	포 천	9.9	15,390	1,564
평 택	5.6	25,321	3,836	의 왕	1.6	2,469	558	동두천	4.6	4,494	877
시 흥	11.5	45,471	5,810	여 주	3.9	4,252	638	가 평	3.6	2,205	613
화 성	7.6	41,267	3,807	양 평	2.4	2,502	533	연 천	2.9	1,331	259
광 명	2.9	10,168	2,177	과 천	1.2	838	156				

(단위: %, 명)

- 급증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정책을 점차 확대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
 - 현재까지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은 지원대상이 결혼이주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조속한 동화를 지원하는 정책에 머무르고 있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까지는 제도적 한계 존재
-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한 명의 주민으로서 실존하는 외국인주민의 문화와 욕구를 인정하는 시도들이 필요한 시점
 - 단순히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복지수혜자로서가 아닌, 외국인주민의 자격과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재단 사업안내: 〈9988 특특쇼〉 현장오디션

소속단체	일정	장소	문의전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8. 18.(목)	하남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26-9527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남부)	8. 23.(화)	유엔아이센터 화성아트홀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북부)	8. 24.(수)	의정부 예술의전당	840-5303

03 FACT CHECK

옆집에 이민자가 살아도 괜찮습니까?

- 2015년 발표된 세계가치조사(WVS)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다른 인종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이 25.7%로 전체 17개국에서 16위를 차지
 - '외국인노동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31.8%로 전체 17개국에서 14위
 - 2015년 실시한 국민 다문화수용성(KMAI) 조사* 결과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소득이 낮을수록, 대도시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남
-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성비 불균형, 산업수요 등으로 외국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주민과의 접촉이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다문화에 대한 수용력은 낮은 편
 - 사회 내 공존하는 다른 문화는 사회적 역동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 이주민의 증가는 단일민족의식을 가진 한국인에게 정체성, 가치관의 혼란과 이주민에 대한 위험인식 및 상호 간의 갈등 등 반-다문화 정서가 확산되기도 함
- 반-다문화 인식을 해소하고 동화가 아닌 공존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
 - 모든 이주민을 포괄하는 다문화 정책의 수립과 치안 강화, 인식 교육, 교류의 확대 등이 필요
- 국가 간 인구인동, 이주민 증가는 메가트렌드로 다문화사회로의 인식 전환과 준비가 필요
 - 이주민은 단순히 사회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닌 권리와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권리 증진의 노력이 중요하며,
 - 최근 유럽에서 발생하는 인종갈등과 테러의 예에서 보더라도 잠재적으로 예상되는 미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 차원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이 필요*

*세계가치조사 (World Value Survey), '10-'14년

*여성가족부

* 민족정서가 강한 독일도 2004년 이민법을 개정하여 적극적 사회통합정책을 추진

04 통계로 보는 복지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명 돌파, 9년 만에 두 배



- 2016.6월 말,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2,001,828명
 - 2000년, 50만 명, 2007년, 100만 명, 2013년 150만 명을 넘어섰고, 3년 만에 200만 명 돌파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체류외국인이 연평균 8%씩 증가
 - 국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50.6%), 미국(7.8%), 베트남(7.2%), 태국(4.6%), 필리핀(2.7%), 우즈베키스탄(2.6%) 순
- 재외동포, 방문취업 자격의 외국국적동포의 증가
 - 2007년 시행된 방문취업제로 중국동포를 비롯한 재외동포의 국내체류가 증가하고 있음

*단위 : 명, %